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단4516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대한민국

변론 종결2014. 7. 18.

판결 선고2014.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8,739원, 원고 B에게 1,768,739원, 원고 C에게 8,401,511원, 원고 D에게 5,748,402원, 원고 E에게 3,095,2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F은 농지분배의 대상인 양주시 G 전 83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받아 1950년경부터 1958년경까지 미곡 493승을 상환하고, 1961년경 그 상환완료의 확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59.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68. 10. 18. 사망하여 원고들과 H이 그들의 모친인 I과 함께 F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I도 1994. 10. 29. 사망함으로써 원고들과 H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685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3. 9. 2. 이 사건 토지 중 5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54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54분의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명의로, 54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D 명의로, 54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원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3. 12. 31.까지 'J'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55m²(이하 '이 사건 대부 부분'이라 한다)를 대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2008. 9. 14.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들과 H 소유의 이 사건 대부 부분을 K에게 대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부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부 부분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14.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대부 부분 555m²에 대한 통상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 부분의 2008. 9. 14.부터 2013. 12. 31.까지의 차임의 총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3,877,979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2008. 9. 14. ~ 2013. 9. 13.	5년	33,586,560원	22,377,600원
2013. 9. 14. ~ 2013. 12. 13.	3개월	1,886,745원 (월 임료 628,915원 × 3개월)	1,257,075원
2013. 12. 14. ~ 2013. 12. 31.	18일	365,176원 (월 임료 628,915원 × 18일 / 31일)	243,304원
합계			23,877,979원

(2) 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된 망 F이 농지분배의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1950년경부터 1958년경까지 미곡 493승을 상환하고, 1961년경 그 상환완료의 확인을 받은 사실에 보태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 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68,739원(= 23,877,979원 × 4/54), 원고 C에게 8,401,511원(= 23,877,979원 × 19/54), 원고 D에게 5,748,402원(= 23,877,979원 × 13/54),

원고 E에게 3,095,293원(= 23,877,979원 × 7/5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부 부분에 관한 대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현정

별지